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2016. 5. 29.) 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0. 10. 20.)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6. (생 략) 7. <u>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 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 황</u>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8조(실태조사)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의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63